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」 일부개정고시 알림

1. 관련 :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0조 및 제21조
2. 「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115호, 2021.12.29.) 하였습니다.
3. 동 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(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제개정고시등 및 고시훈령예규)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 수입신고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민원인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「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」 일부개정고시 1부.

2. 「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」 고시전문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본부(54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2개 전부서), 6개 지방청장(54개 전부서), 농림축산식품부장관(검역정책과장), 농림축산검역본부장(동물검역과장), 관세청장(통관물류정책과장), 국회 보건복지위원장, (사)한국수입육협회장



주무관 김나영 사무관 장현철 수입검사관리과 전결 2021. 12. 30.
장 이호동

협조자

시행 수입검사관리과-8003 (2021. 12. 30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
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221 팩스번호 043-719-2200 / rangz@korea.kr / 대국민 공개